

「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」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62호, 2009. 8. 12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령,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「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」을 일부개정고시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간이 단축되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.

가. 기타 식품판매업소 판매제품을 HACCP 지정품목으로 추가(제4조제1항,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항)

- (1) 냉장·냉동식품 등 기타 식품판매업소 판매제품에 대한 HACCP 지정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 품목에 추가
- (2) 최종 식품판매 단계까지 HACCP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유통·판매식품의 안전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.

다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신청서 등 제출기관 변경(제9조제1항, 제3항, 제4항, 제10조제1항,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)

- (1) 「식품위생법시행령」,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HACCP 적용업소 지정 권한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관됨.
- (2)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신청서 및 지정변경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.

나. 최초 신청 식품유형 식품에 대한 심의제도 폐지(제4조제6항)

- (1) 최초로 지정신청을 하는 식품유형 식품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평가 전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, 실효성이 적고 민원인의 불편 초래
- (2) 최초 신청 식품유형 식품에 대한 별도의 심의제도를 폐지함.
- (3) 지정 평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확대되고, 민원처리기

라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·평가 기관 변경(제13조제1항, 제2항,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)

- (1) 「식품위생법시행령」, 「식품의약품안

신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및 「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의 개정HACCP 적용업소 정기 조사·평가 권한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이관됨.

- (2)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·평가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도록 함.

마. 식품제조·가공업체 선행요건관리 평가항목 조정 및 식품별 평가사항 삭제 (제5조 관련 별표 3)

- (1) 중소기업체가 HACCP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선행요건 중 작업장의 바닥, 벽, 천장 등 개·보수가 적용의 결림돌로 작용
- (2) 바닥, 벽, 천장, 출입문, 창문의 재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작업장을

원료처리실, 제조·가공실, 내포장실로 한정하고, 미적용업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일 등과 같이 흠이 있는 재질도 위생관리를 적절히 할 경우 개·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
- (3) HACCP 적용에 따른 소요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적용 확대가 기대됨.

바. 「훈령·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(제27조)

※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수입식품등 검사지침」 일부개정고시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-64호, 2009. 8. 13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부 개정된 「식품위생법」 및 하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검역소장의 수입식품 검사업무 권한을 삭제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무작위표본검사 시 적용할 중점검사항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입식품 검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수입식품등 검사지침」을 일부개정고시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「식품위생법」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

비(제1조, 제3조제1항, 제4조제1항, 제2항, 제5조제1항, 제6조, 제7조, 제8조제1항부터제3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2항,